

조례안 심사보고서



거창군의회
[의회운영위원회]

목 차

1	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---	--	---

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3. 11.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. 3. 6.

나. 발 의 자: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이흥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
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4. 3. 7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(2024. 3. 11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이흥희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금액 변경(안 제6조제1항)

- 1)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: 월 900,000원 ⇒ 월 1,200,000원
- 2) 보조활동비: 월 200,000원 ⇒ 월 30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최영미]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12.14. 일부개정] 개정예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,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월 900,000원”을 “월 1,200,000원”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“월 200,000원”을 “월 3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